

신고자 보호 유의사항

(완료: ○, 해당사항없음:-)

단 계	확인 사항	비고
상담·접수	○ 다수 신고인 동시 방문 시 분리 상담	
	○ 신고자 상담 중 다른 용무 방문자와의 접촉 차단	
	○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	
	○ 유선으로 신고내용 확인 요청시 접수번호,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	
	○ 신고자 연락가능시간 및 방식, 조사결과 통보방법 등 확인	
	○ 사건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연락 최소화	
	○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 확인	
	○ 보호·보상제도,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 등 신청인에게 안내	
사 실 확 인 (조 사)	○ 신분공개 동의 여부 재확인, 변경 희망시 신분공개 변경동의서 수령	
	○ 신고자 연락가능시간 및 방식, 조사결과 통보방법 등 재확인 (주택주소, 이메일, 전화, 문자통보 등)	
	○ 자료 요구 등 조사과정에서의 신분유출 가능성 확인 - 자료제출요구 문서 등에 대한 '비공개' 설정 - 외부발송 문서에 신고자 인적사항 등 익명처리	
	○ 담당공무원과 기관 방문 시 담당공무원에게 신고자 비밀보장 안내	
	○ 피신고업체 방문 시 사전에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평소와 같이 행동하도록 안내(재직 중인 경우)	
	○ 신고자 면담시 면담장소가 비밀보장에 적합한 장소인지 여부 확인, 외부 컴퓨터 등을 사용한 경우 암호 설정, 데이터 삭제 등 조치	
	○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필요시 신고자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조사	
	○ 신고자 보호 조치 필요여부 확인(필요시 신고자보호과에 통보)	
이첩·송부	○ 이첩·송부 시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재확인	
	○ 신분공개 부동의한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자를 알 수 있는 내용(면담장소, 증빙자료 등) 삭제	
	○ 조사기관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및 처벌 규정 고지	
	○ 조사기관 담당자와 신고자간 연락은 권익위 조사관 경유(신분공개 부동의시)	
의안 작성	○ 의결서에 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명칭과 표현 등은 익명처리하거나 수정	
통 보 (결과 통지)	○ 통보 전 결과통보 방식 재확인	
	○ 통보 시 제목에 신고인(민원인) 이름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	
	○ 공익신고 보호제도 안내문 첨부	
이행 점검	○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적극 검토	
	○ 보호조치 이후에도 불이익조치가 계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	
기 타	○ 권리구제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 보장 안내(행정심판, 노동, 소청 등) - 이유서 등 상대방 송부시 신고자 보호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 필요	
	○ 재판과정에서 신고자 비밀 보장 안내 - 공판 검사나 판사가 신고자 보호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 필요	
	○ 보도자료 배포시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 삭제	